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0년 3월 4일
-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소방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(시행: 2020. 4. 1.)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소방본부: 행정부지사 소관→도지사 직속으로 조정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(시행: 2020. 4. 1.)됨에 따라 소방본부

를 행정부지사 소관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.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